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강원지방통계지청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3. 15.(수) 08:00	배포 일시	2023. 3. 15.(수) 08:00
담당 부서	강원지방통계지청 경제사회조사과	책임자	과 장 안태현 (033-258-3653)
		담당자	팀 장 김영일 (033-258-3672)

2023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일 리 두 기

- 이 자료는 전국 표본조사구내 약 36,000가구 중 강원지역 약 2,2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강원지방통계지청에서 조사한 결과임
 -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0~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소급보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음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2019년 1월 자료부터 2018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 하게 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를 보정하였음
 -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2018년 8월 고용동향 자료 공표부터 취업시간 부분이 변경되었음
-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의 공급측면을 평가하는 조사이므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w>)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목 차

□ 2023년 2월 고용동향(요약)	1
□ 2023년 2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5
2. 취업자 동향	
가. 성별 취업자	6
나. 산업별 취업자	6
다. 직업별 취업자	7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7
마.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8
바. 고용률	8
3. 실업자 동향	9
◇ 부 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10
2.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11
3. 자주하는 질문	13
4.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15

강원 2월 고용동향

(전년동월대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경제활동인구 구조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2023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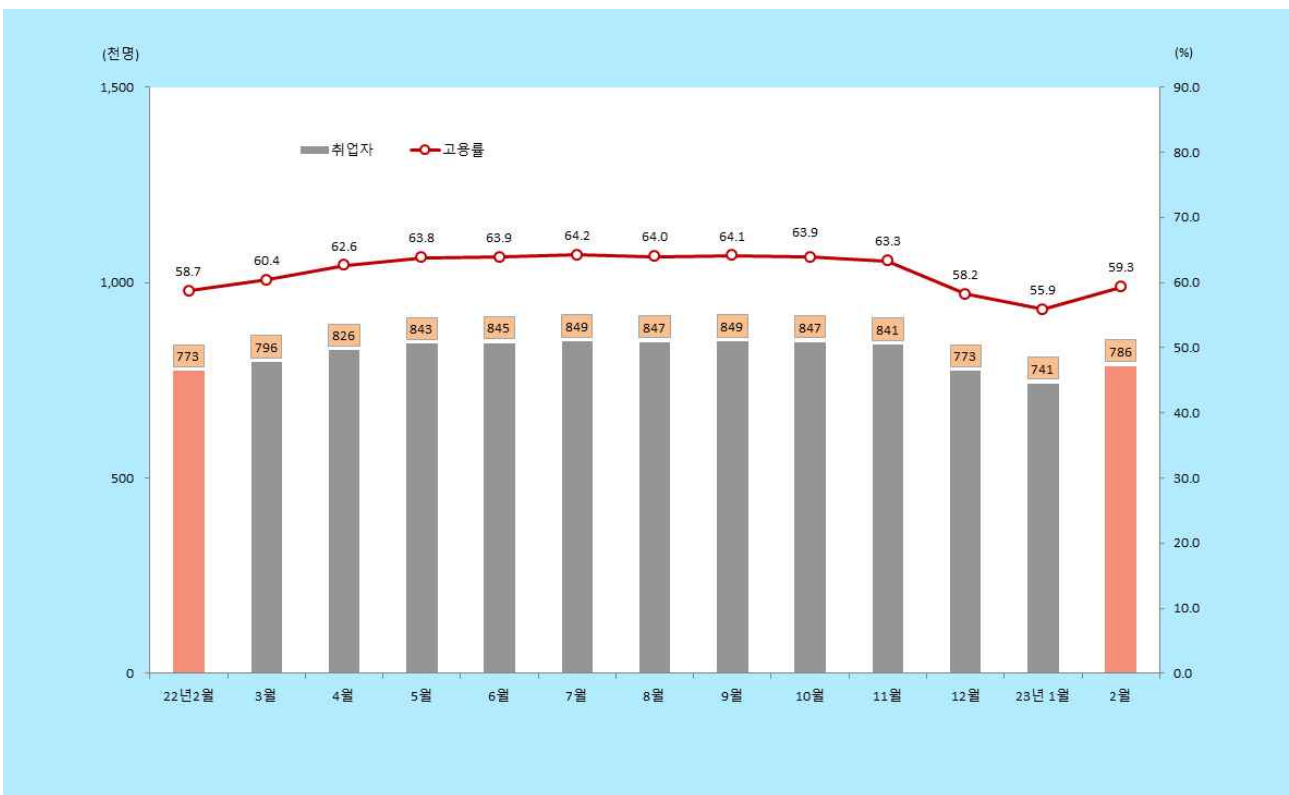
- 2023년 2월 강원도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취업자는 7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만 8천명), 건설업(2천명)에서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만 1천명), 제조업(-8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천명)에서 각각 감소하였음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0%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

(단위: 천명, %)

	'22.2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취업자	773	849	847	841	773	741	786
전년동월대비 증감	37	12	7	-2	-3	17	13
고용률	58.7	64.1	63.9	63.3	58.2	55.9	59.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65.2)	(69.0)	(69.0)	(68.5)	(66.9)	(65.6)	(66.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15세~6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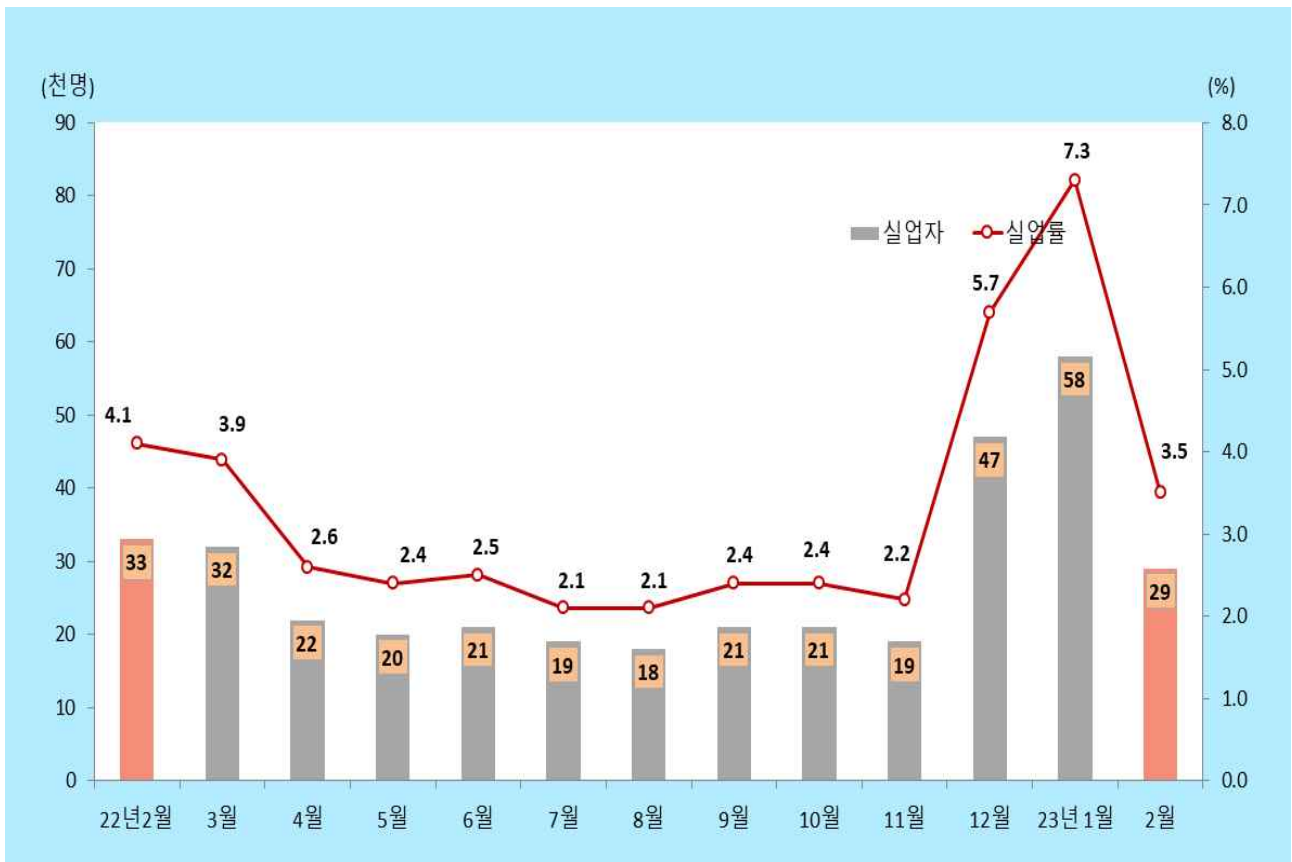


- 2023년 2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실업자는 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하였음

<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감 추이 >

(단위: 천명, %)

	'22.2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실업자	33	21	21	19	47	58	29
전년동월 증 감	-16	3	-3	3	-6	10	-4
실업률	4.1	2.4	2.4	2.2	5.7	7.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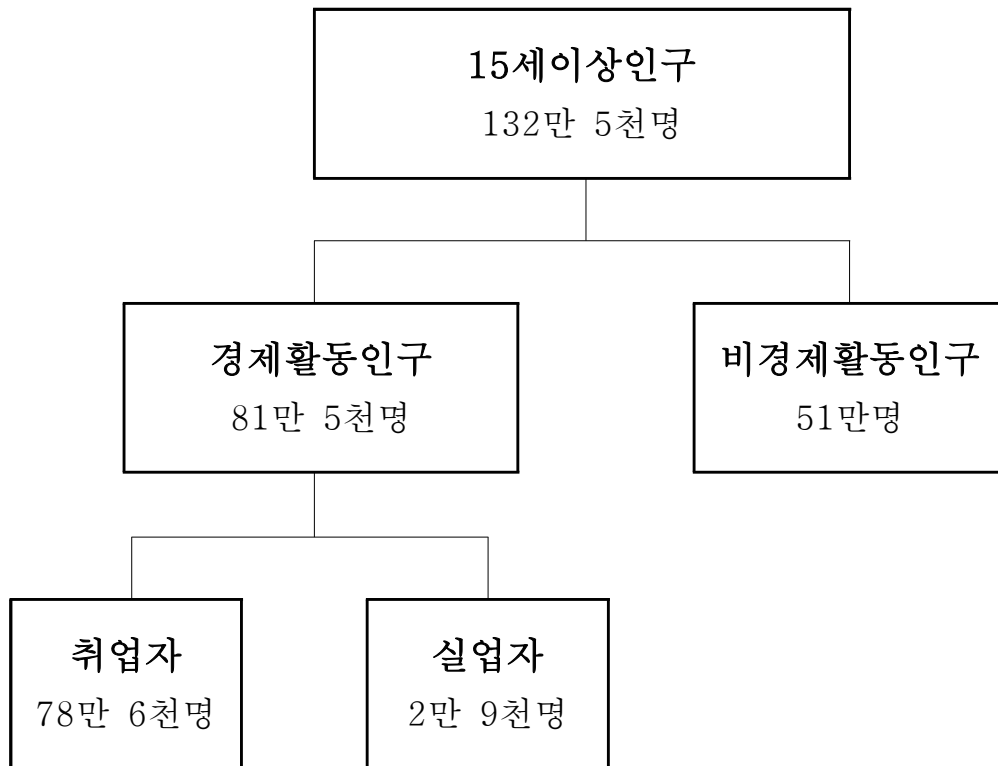


< 2023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p)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1,318	1,325	1,325	7	0.5
■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806 (61.2)	798 (60.3)	815 (61.5)	9 (0.3)	1.1 -
성 별	▶ 남자 (참가율)	424 (65.6)	425 (65.5)	427 (65.8)	3 (0.2)	0.6 -
	▶ 여자 (참가율)	382 (56.9)	374 (55.2)	388 (57.3)	6 (0.4)	1.5 -
◇ 취 업 자 (고용률)		773 58.7	741 55.9	786 59.3	13 0.6	1.7
산 업 별	▶ 농림어업	43	32	33	-11	-24.9
	▶ 광공업	64	53	52	-12	-18.4
	· 제조업	56	49	48	-8	-14.1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66	656	701	36	5.3
	· 건설업	66	67	68	2	3.6
	· 도소매 · 숙박 · 음식점업	181	186	179	-2	-1.3
	·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및 기타	341	328	380	38	11.2
	·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78	75	75	-3	-3.7
종 사 상 지 위 별	▶ 자영업자	177	177	180	2	1.3
	▶ 무급가족종사자	32	29	29	-4	-11.1
	▶ 상용근로자	394	397	395	1	0.1
	▶ 임시근로자	140	113	161	21	15.1
	▶ 일용근로자	30	23	22	-7	-24.6
취 업 시 간 대 별	▶ 36시간 미만	193	182	214	21	11.0
	· 1 ~ 17시간	87	74	109	22	24.9
	· 18 ~ 35시간	106	108	105	-1	-0.5
	▶ 36시간 이상	550	528	544	-6	-1.1
	· 36 ~ 52시간	458	449	464	6	1.3
	· 53시간 이상	92	79	80	-12	-13.1
◇ 실 업 자 (실업률)		33 4.1	58 7.3	29 3.5	-4 -0.6	-13.0 -
■ 비경제활동인구		512	527	510	-2	-0.3

< 강원도 경제활동인구 구성 >



(단위 : 천명, %)

구 분	2022년	2023년		전년동월대비	
	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취업자	773	741	786	13	1.7
실업자	33	58	29	-4	-13.0

2023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2023년 2월 15세이상 인구는 13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5%)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8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1%)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3%)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2만 2천명으로 1천명(-0.5%), 여자는 28만 9천명으로 4백명(-0.1%) 각각 감소하였음

<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참가율 >

(단위 : 천명, %, %p)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1,318	1,325	1,325	7	0.5
▶ 남 자	647	648	648	2	0.2
▶ 여 자	671	677	677	5	0.8
<경제활동인구>	806	798	815	9	1.1
(참가율)	(61.2)	(60.3)	(61.5)	(0.3)	-
▶ 남 자	424	425	427	3	0.6
(참가율)	(65.6)	(65.5)	(65.8)	(0.2)	-
▶ 여 자	382	374	388	6	1.5
(참가율)	(56.9)	(55.2)	(57.3)	(0.4)	-
<비경제활동인구>	512	527	510	-2	-0.3
▶ 남 자	223	224	222	-1	-0.5
▶ 여 자	289	303	289	0	-0.1

2. 취업자 동향

가. 성별 취업자

- 취업자는 7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1.7%)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만 1천명으로 2천명(0.5%), 여자는 37만 5천명으로 1만 1천명(2.9%) 각각 증가하였음

< 성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773	741	786	13	1.7
▶ 남 자	409	400	411	2	0.5
▶ 여 자	365	340	375	11	2.9

나.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만 8천명), 건설업(2천명)에서 각각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1만 1천명), 제조업(-8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천명)에서 각각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773	741	786	13	1.7
▶ 농림어업	43	32	33	-11	-24.9
▶ 광 공 업	64	53	52	-12	-18.4
· 제조업	56	49	48	-8	-14.1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66	656	701	36	5.3
· 건설업	66	67	68	2	3.6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1	186	179	-2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41	328	380	38	11.2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8	75	75	-3	-3.7

다. 직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만 4천명(11.3%), 서비스·판매종사자 8천명(3.8%),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는 4천명(1.4%)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천명(-19.9%), 사무종사자는 4천명(-3.1%) 각각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773	741	786	13	1.7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0	133	134	14	11.3
▶ 사무종사자	131	126	127	-4	-3.1
▶ 서비스·판매종사자	205	210	213	8	3.8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1	32	33	-8	-19.9
▶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276	240	280	4	1.4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비임금근로자는 20만 8천명으로 1천명(-0.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2천명(1.3%)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천명(-11.1%)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는 57만 8천명으로 1만 4천명(2.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 1천명(0.1%), 임시근로자는 2만 1천명(15.1%)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7천명(-24.6%)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773	741	786	13	1.7
▶ 비임금근로자	210	207	208	-1	-0.6
· 자 영 업 자	177	177	180	2	1.3
· 무급가족종사자	32	29	29	-4	-11.1
▶ 임금근로자	564	534	578	14	2.5
· 상 용	394	397	395	1	0.1
· 임 시	140	113	161	21	15.1
· 일 용	30	23	22	-7	-24.6

마.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1만 4천명으로 2만 1천명(11.0%)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4만 4천명으로 6천명(-1.1%)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6.0시간으로 1.1시간(-3.0%)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단위: 천명, 시간, %)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773	741	786	13	1.7
▶ 36시간 미만	193	182	214	21	11.0
· 1~17 시간	87	74	109	22	24.9
· 18~35 시간	106	108	105	-1	-0.5
▶ 36시간 이상	550	528	544	-6	-1.1
· 36~52 시간	458	449	464	6	1.3
· 53시간 이상	92	79	80	-12	-13.1
▶ 일시휴직	30	31	28	-2	-6.6
▶ 주당평균취업시간	37.1	37.0	36.0	-1.1	-3.0

바. 고용률

-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3.4%로 0.2%p, 여자는 55.4%로 1.1%p 각각 상승하였음

< 성별 고용률 >

(단위: %, %p)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증감
< 전 체 >	58.7	55.9	59.3	0.6
(15~64세)	(65.2)	(65.6)	(66.0)	(0.8)
▶ 남 자	63.2	61.8	63.4	0.2
▶ 여 자	54.3	50.3	55.4	1.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15세~64세 고용률

3. 실업자 동향

- 2023년 2월 실업자는 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13.0%)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로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3.3%로 1.4%p 하락하였음

<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2022. 2.	2023. 1.	2023. 2.	전년동월대비 (전년동분기)	
				증감	증감률
< 실업자 >					
◇ 전 체	33	58	29	-4	-13.0
▶ 남 자	15	24	16	1	3.3
▶ 여 자	18	34	13	-5	-27.5
< 실업률 >					
◇ 전 체	4.1	7.3	3.5	-0.6	-
▶ 남 자	3.6	5.7	3.7	0.1	-
▶ 여 자	4.7	9.0	3.3	-1.4	-

부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강원지역 표본조사구 약 2,200가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현역군인, 사회복지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주요 용어

- 1) 15세이상 인구: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2)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3) 취업자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4)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5)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6)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7)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 나이하한 만 15세, 나이상한 없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나이하한 만 15세, 나이상한 만 64세
- 8)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부록 2 한국표준 산업 · 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사업·개인·공공서비스 E, L~U)

<p>A 농업, 임업 및 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p>B 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p>C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식품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p>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p>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 수도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p>F 건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p>G 도매 및 소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p>H 운수 및 창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p>I 숙박 및 음식점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p>J 정보통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p>K 금융 및 보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p>L 부동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 부동산업 	<p>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p>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p>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P 교육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교육서비스업 <p>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p>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p>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p>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p>U 국제 및 외국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 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개인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 기준임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 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쉬는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제거된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 4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 1. 11.(수)
2023년 1월 고용동향	2023. 2. 15.(수)
2023년 2월 고용동향	2023. 3. 15.(수)
2023년 3월 고용동향	2023. 4. 12.(수)
2023년 4월 고용동향	2023. 5. 10.(수)
2023년 5월 고용동향	2023. 6. 14.(수)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 7. 12.(수)
2023년 7월 고용동향	2023. 8. 09.(수)
2023년 8월 고용동향	2023. 9. 13.(수)
2023년 9월 고용동향	2023. 10. 13.(금)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 11. 15.(수)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 12. 13.(수)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통계청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게재하겠습니다.